

의안번호	2213287
의 퇴 인	조승환 의원
회 답 일	2025. 10. 22.
추계번호	25B5335

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억원(연평균 8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해양수산산업육성기본계획 (안 제5조)	400	-	-	-	-	400	80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국가의 책무 등)	국가는 이전 대상기관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(제1항)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광역시가 국제적 해양 거점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심 배후지역과 연계하여 해양수산산업의 첨단화·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5조(해양수산산업육성기본계획)	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산업육성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1. 해양수산산업 관련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. 해양수산산업 분야 연구개발(R&D) 및 시험·인증체계 구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축에 관한 사항 3. 해양수산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·금융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4. 해양수산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5. 해양수산산업 분야의 국제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
3	안 제6조(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의 지정 등)	해양수산부장관은 이전 대상기관의 정주여건 개선과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집적지 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(이하 “혁신지구”라 함)를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혁신지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함(제2항) 1. 이전 대상기관 및 해양수산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 공간 2.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 위한 주택단지 및 공동주거시설 3. 유치원·초등학교·국제학교 등 교육시설 4. 문화·체육·의료·상업 등 복합 편의시설 5. 해양수산산업 분야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시설	의무규정
4	안 제7조(해양수산산업 집적지의 조성)	해양수산부장관은 혁신지구에 해양수산산업 집적지를 조성하고 관련 공공기관, 기업, 연구기관 등이 밀집하여 상호 연계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집적지에 해양기술연구기관, 해양플랜트·해운 등 관련 기업, 해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우선적으로 유치하여야 함(제2항)	
5	안 제8조(해양수산산업육성협의체의 운영)	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및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와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해양수산산업육성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함)를 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6	안 제9조(국제해양특구의 지정 등)	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광역시가 국제적 해양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장의 관할 구역 중 해양관광·해양수산산업의 선진화·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제해양특구(이하 “국제해양특구”라 함)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양특구를 지정한 경우 국제해양특구에 교통·문화·관광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		부산광역시는 제1항에 따라 국제해양특구가 지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해양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7	안 제10조(국제해양특구에 대한 지원 등)	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국제해양특구 내 항만, 철도, 도로 등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국제해양특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기업·투자기관·연구기관 등에 대한 용지 매입비의 용자, 토지의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부산광역시는 국제해양특구로 이전하는 기업·투자기관·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 1. 산업기반시설,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 지원 2. 해양수산업 관련 분야 연구를 위한 연구시설 설치에 필요한 투자비 3. 해양수산업 관련 분야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4.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	
8	안 제11조(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원)	국가는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, 교육, 교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권리는 현재 이전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향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직원 및 신입직원에게도 적용함(제2항)	의무규정
9	안 제14조(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)	부산광역시장은 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함)를 설치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(제2항) 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. 정부의 보조금 3.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4.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(국가의 책무 등)	—	• 미대상: 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,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2	안 제5조(해양수산업육성기본계획)	○	• 유사사례 참고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3	안 제6조(해양수 산산업혁신지구 의 지정 등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은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 지정요건, 지정 방법·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 지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
4	안 제7조(해양수 산산업 집적지의 구성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현 시점에서는 해양수산산업 집적지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5	안 제8조(해양수 산산업육성협의 체의 운영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은 해양수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및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와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해양수산산업육성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6	안 제9조(국제해 양특구의 지정 등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산광역시·국제해양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·국제해양 거점도시 중 해양관광·해양수산산업의 선진화·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제해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- 또한, 제정안은 국가 및 부산광역시·국제해양특구 내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국제해양특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·투자기관·연구기관 등에 대한 용지 매입비의 용자, 토지의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부산광역시는 국제특구로 이전하는 기업·투자기관·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, 연구시설 설치에 필요한 투자비,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감소 및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7	안 제10조(국제 해양특구에 대한 지원 등)	×	- 다만, 제정안은 국제해양특구 지정 대상지역의 요건, 지정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국제해양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 및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	안 제11조(이전 대상기관 임직원 에 대한 지원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은 국가가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, 교육, 교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지원은 현재 이전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향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직원 및 신입직원에게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-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이전 대상기관, 해당 기관별 지원 대상 임직원 수, 지원 기준·단가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이전 대상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관련 정보가 부재하여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. -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소속 직원 중 부산 이전 직원(약 600명)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직원 전월세 지원(32억원), 이주·이사지원(44억원), 교통지원(통근버스·KTX 등, 36억원) 등 약 113억원을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음 [표] 해양수산부 직원 정주여건 개선 관련 예산 편성 현황 (단위: 백만원) <table><thead><tr><th colspan="2">사업명</th><th>사업개요</th><th>2026 예산안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 colspan="2">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(7041-303)</td><td>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및 안정적 정주·근무 여건 조성</td><td></td></tr><tr><td rowspan="7">직원 정주여건 개선 관련 예산</td><td>전월세</td><td>전세이자 및 월세비용 지원</td><td>3,230</td></tr><tr><td>이주지원</td><td>이주지원비 지급</td><td>1,723</td></tr><tr><td>이사비</td><td>이사 비용 지급</td><td>2,717</td></tr><tr><td>버스</td><td></td><td>2,432</td></tr><tr><td>고속철도</td><td>통근버스 임차료, 고속철도</td><td>441</td></tr><tr><td>공용차량</td><td>요금 할인 등 교통지원</td><td>364</td></tr><tr><td>업무택시</td><td></td><td>400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합 계</td><td></td><td>11,307</td></tr></tbody></table> 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	사업명		사업개요	2026 예산안	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(7041-303)		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및 안정적 정주·근무 여건 조성		직원 정주여건 개선 관련 예산	전월세	전세이자 및 월세비용 지원	3,230	이주지원	이주지원비 지급	1,723	이사비	이사 비용 지급	2,717	버스		2,432	고속철도	통근버스 임차료, 고속철도	441	공용차량	요금 할인 등 교통지원	364	업무택시		400	합 계			11,307
사업명		사업개요	2026 예산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(7041-303)		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및 안정적 정주·근무 여건 조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직원 정주여건 개선 관련 예산	전월세	전세이자 및 월세비용 지원	3,2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이주지원	이주지원비 지급	1,72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이사비	이사 비용 지급	2,7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버스		2,43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고속철도	통근버스 임차료, 고속철도	44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공용차량	요금 할인 등 교통지원	36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업무택시		4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		11,30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	안 제14조(해양 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회 계의 설치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은 부산광역시장이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동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, 정부의 보조금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특별회계세출의 규모 및 재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해양수산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
 - 유사사례를 참고하면,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해양수산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억원(연평균 8,000만원)으로 추계됨
 - 추계기간 중 첫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산업 관련 유사 연구용역 사례

(단위: 백만원)

과제명	연도	금액
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(2022~2026) 수립 연구	2021	400
해양수산 산업 육성을 위한 항만재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	2023	400
평 균		400

자료: 국가종합전자조달(나라장터) 검색

[표 3] 해양수산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해양수산산업육성기본계획 (안 제5조)	400	-	-	-	-	400	80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na.go.kr